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821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노용호・이명수・엄태영

김용판 • 박덕흠 • 지성호

김희곤 · 김성원 · 김영식

유경준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문서 또는 전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 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중소벤처기업부렁으로 정한 다. 개 정 안

제10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 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 다)에 따른다.